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6
----------	-------

제출년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 이유

출산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축하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다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

- 셋째아 이상 30만원을 출생아별로 지급

→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지급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5만원은 기존과 동일)

나.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실시 적용일 규정(부칙 제2조)

-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7. 25. ~ 2013. 8. 14. (제출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13년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13.9.12)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셋째아 이상 30만원을 출생아 별로”를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의”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조례 시행 이후 국가”를 “국가”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보호자 및 신생아의 생년월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호자	부		생년월일	년 월 일
	모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급기준)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5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을 출생아 별로 지급한다.</p>	<p>제4조(지급기준) ----- -----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 --.</p>
<p>제5조(지급신청) ① (생 략)</p> <p>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 이라 한다) 및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동장에게 <u>별지 제1호 서식</u>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신청서 1부(<u>별지 제1호 서식</u>)</p> <p>2. · 3. (생 략)</p>	<p>제5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별지 제1호서식</u> ----- ----- ----- ----- -----.</p> <p>③ ----- -----.</p> <p>1. -----<u>별지 제1호서식</u>-----</p> <p>2. · 3. (현행과 같음)</p>

제7조(환수조치) ①·② (생략)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를,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호자	(생략)		생년월일	-
	(생략)		생년월일	-
신생아	(생략)		생년월일	-

제7조(환수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세기본법」의 -----

-----.

제8조(대장 등 비치)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
-----.

[별지 제1호서식]

보호자	(현행과 같음)		생년월일	년 월 일
	(현행과 같음)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생아	(현행과 같음)		생년월일	년 월 일

첨부 3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1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출산축하금 넷째아 및 다섯째아 출산축하금 지급 약 33,000천원

- 산출근거

(넷째아 20명×1,000천원 = 20,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4명 ×5,000천원 = 20,000천원) - (셋째아 이상 24명×300천원 = 7,200천원)

- 지급인원 산출 : 2011~2013년도 지급현황 참고

[단위: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1~5월)
넷째아	26	18	9
다섯째아	0	0	2

○ 관련 조문 : 제4조(지급기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송경희
연락처	02-3153-8912